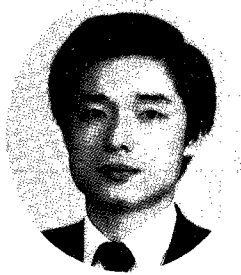


법령해설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



김 태 환
과학기술처 원자력개발과장

그 동안 관계부처, 반핵단체 및 지역주민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거듭했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93년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본 법은 현재 국민들 사이에서 정부의 가장 골치아픈 현안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부지를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선정할 것인가와 처분장 부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 어떤 혜택을 부여할 것인가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

다.

법제정의 필요성

정부는 지난 86년 원자력법을 개정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과학기술처의 책임과 권한하에 수행하기로 결정한 이후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역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최종 부지 선정이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중인 9기의 원자력발전소에는 약 57,000 드림의 중저준위 폐기물과 3,000톤

의 사용후연료가 발생되어 원전 부지내의 임시저장시설에서 보관 중에 있으며, 1999년경에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처분장의 건설기간이 5~6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94년 중에는 처분장 부지를 반드시 선정해야 하며, 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부지선정작업이 본격화되고 아울러 시설주변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및 지역개발사업도 병행하여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법의 제정에 앞서 입법예고 및 3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제출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부지선정 과정에서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규정을 대폭 강화하였다.

본 법의 체계

그동안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원자력법 제76조 내지 제90조에 근거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동법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절차와 국토이용계획과의 관계 등이 미비하며 특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전혀 없어 이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를 본법의 제정을 통해 마련하게 되었다.

우선 본법은 주민의 참여하에 부지선정을 결정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후보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 등 하나는 부지선정 과정에서 일방적인 정부정책의 결정으로 주민의 의사가 무시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본법에서는 시설개발사업 및 지역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전단계, 진행단계, 사후단계에서 주민에 대한 공고·열람 등을 의무화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데 만전을 기했으며, 주민참여의 대표적인 수단인 공청회도 시설지구 지정 전, 환경영향평가 수행시, 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간 계획 수립시 등 제반 단계마다 반드시 개최토록 하였다.

또한 시설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대표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지역협의회를 두도록 하였고, 지역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시설주변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두도록 하므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법은 지역지원사업에 대한 범위·내용·수행주체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해 놓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전원 3법에 근거하여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등이 건설되어 있는 록카쇼무라 지역에 대해 운영개시 후 5년까지 총 175억엔의 지역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원자력 폐기물정책법에 근거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건설되는 지역에 연간 1천만달러, 운영기간 중에는 연간 2천만달러를 지원하고 있는 등 각국은 공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입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제일 기피하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를 원활히 선정하기 위해서는 시설입지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가하락 등 지역경제의 낙후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본법의 제정을 통해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부지의 선정에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법은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 제정작업을 완료한 후 94년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의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지구의 지정(제3조, 제5조, 제6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용지의 공간적 범위를 확정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일반국민에게 미리 알

려줌으로써 이해관계인에게 재산적 행사 등에 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시설지구를 고시토록 하였다.

지정절차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시설지구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방법, 시설개요,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등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원자력법상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대한 최고정책심의기구인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토록 하였다.

이러한 시설지구 지정의 효력은 토지소유자 등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건축 등 시설지구개발사업의 시행에 저해가 되는 행위는 사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케 되고 이러한 행위제한을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설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주민의견 수렴절차(제4조)

시설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전절차로서 일간신문 등에서의 공고, 1월 이상 주민 열람 기회 부여, 주민의 의견제출권리 보장, 공청회 개최 및 지역협의회 구성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동조항은 시설지구 지정절차에 있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기회를 보장하고, 지정이후의 주민불편과 민원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주민합의에 의해 부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의 법안심의과정에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조항(제4항)이 신설되었으며, 그외 주민열람기간이 「2주 이상」에서 「1월 이상」으로, 공청회의 개최시기가 「시설지구 지정전」으로 명확히 표현되는 등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다.

개발사업의 시행자(제7조)

개발사업은 원자력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법에 규정된 사업자와 원자력법에 의해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양법에 의해 사업자가 달라지는 모순을 없애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발사업은 원자력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해 한 국원자력연구소가 위탁받아 수행

하도록 확정되었다.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제8조, 제9조)

과학기술처장관은 사업자가 작성한 개발사업실시계획을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승인·고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처장관이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시설지구의 개발에 관한 계획」은 개발구상을 담은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실시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일컫는 것으로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등이 포함된다.

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수도법, 하수도법, 공유수면매립법, 항만법 등 총 18개법에 의한 허가·지정·인가·승인·인정·결정·해제 또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미리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하였다. 이러한 의제조항을 둔 이유는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법령에 의해 획득해야 하는 각종 인·허가 처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2종의 협의로 인한 행정낭비를 위함이다.

토지의 수용 및 이주대책(제11조, 제15조)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시설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자가 본법의 근거에 의해 그 토지 등을 수용 재결로서 강제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시설지구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사업자에게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효과를 완성시켜주는 형식적 행정처분으로써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의 재결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였다. 토지수용법 상에는 재결의 신청을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나 본법에서는 협의취득의 지연 등을 예상하여 재결신청기간을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본법에서는 시설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과 주민 이주대



고리원자력 주변지역의 전복양식장

책 등에 관한 업무의 기준과 절차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수용대상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발사업의 시행 및 준공인가
(제10조, 제12조, 제16조)**

사업자는 실시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개발사업을 시행하되 개발사업중항만·용수시설·도로 등의 건설과 공유수면매립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본법에서는 시설지구의 타당성 조사,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한 측량, 지질조사, 장애물제거, 임시적치장 설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절차 및 보상은 도시계획법 제5조(토지에의 출입 등)와 제6조(손실보상)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개발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준공은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과학기술처장관이 인가하되, 준공인가에 필요한 기술검사 등을 전문성 있는 타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적기착공을 위하여 준공전이라도 사용권 허가를 받아 조성 완료된 일부 용지나 기반시설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제18조)

지원사업계획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는 장기계획과 세부실행 계획이라 할 수 있는 연간계획으로 구분되며, 장기계획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역주민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연간계획은 사업자가 장기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심의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한 후 과학기술처장관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계획과 연간계획의 작성시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 시설주변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장기계획 및 연간계획 수립절차를 규정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적정성과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프로그램을 도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원사업의 내용(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제20조, 제24조)

시설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현행 법체계상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주위에 두고 살아가는 지역주민의 정신적 불안감과 피해의식에 상응하는 지역개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서 원자력법 제84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지원사업의 대상은 시설지구가 들어서는 해당 읍·면·동(시설주변지역)을 위주로 하되 이와 인접하고 있는 인근 읍·면·동에도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의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함으로써 획일적인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지역을 설정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지원대상의 불공평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의 내용은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및 육영사업이 있으며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폭넓게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시행(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

지원사업중 공공시설사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하고 지역역건과 지역숙원사업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군의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

이기 때문에 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행토록 하였다.

소득증대사업과 육영사업은 사업자가 직접 시행토록 함으로써 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 사업자간의 유대를 밀접히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토록 하였다.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과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건설 및 운영기간으로 하되, 과학기술처장관이 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건설기간 전이라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를 과학기술처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신축성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지원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주자 및 주변지역주민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우선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공익사업을 위하여 다른 공익을 침해하는 정도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